

수원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나701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나7010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11 선고 2019가단2091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원

피고, 피항소인 C

피고보조참가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희

변론종결 2022. 6. 28.

판결선고 2022. 8. 2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11. 선고 2019가단2091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3. 3. 접수 제16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제10행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고치고, 제5쪽 하단 제9행 및 제7행의 “이 법원이” 부분을 각각 “제1심법원이”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하단 제7행 “취소한 점” 뒤에 “, 오히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진료기록감정서(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는 문장 단위로 발화가 가능하고 요의를 느낄 때 이를 간병인에게 표현하는 등의 의사표현은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재광, 판사 이명선, 판사 이나경